

'25년 해군 · 해병대 단기 상비에비군 수시 2차 모집 및 선발 공고

해군 『단기 상비에비군*(비상근예비군)』 2차 수시 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상비에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에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

2025년 4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모집 계획

가. 모집부대 및 인원 (15일 복무)

- 1) 해 군 : 4개 부대 18명
- 2) 해병대 : 3개 부대 22명

나. 선발 직책 : 【붙임 #1】 참고

다. 지원자격

- 1) 모집부대에서 단기 상비에비군 훈련(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

- * 동원훈련 미대상자(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 * '25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

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
	소령	중·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지원 가능	'79.1.1일 이후 출생자	'82.1.1일 이후 출생자	'70.1.1일 이후 출생자	'72.1.1일 이후 출생자	'80.1.1일 이후 출생자	'85.1.1일 이후 출생자	'85.1.1일 이후 출생자

- 2) 「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특기에 적합한 자(유사특기자 지원/선발 가능)

- 3)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
단,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 중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직장 업무수행으로 인한 마찰 발생시 소집해제 시킬 수 있음

- * 방침보류자 중 41세 이상 간부, 학생은 지원 가능
- *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

- 4) 선발 후 '25.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 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에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 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 가)·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

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구분	선 발 계 급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지원 가능 계급	소령, 대위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상사, 중사, 하사	중사, 하사	하사, 중사, 병장	병장

* 근거 : 총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

- 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역예비군 소대장·부중대장 등) 및 해군 관할 지역 거주자(제주, 김포일부, 강화, 옹진군) 지원 불가
* 지역예비군 소대장·부중대장 : 병력동원지정 후순위조정 해지 후 지원 가능 (소속 예비군 읍·면·동대에 문의시 조치 가능)

※ 상비에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2 세부 계획

가. 선발 일정

구분	추진일정	세부내용
지원서 접수 / 신원조사	'25. 4.28.(월) ~ '25. 5.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 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 * '24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 *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 【붙임 2】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5. 6. 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

* 세부 일정은 심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

다. 훈련 (복무)

- 1) 연간 **15일** (동원훈련 포함) / 월 1~2회
- 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 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훈련 동참, 부대 중·창설 절차 숙달, 훈련지원, 교관보조, 교보재 관리, 동원·행정업무 지원 등 수행
- 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 불성실 근무, 평가 결과 불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선발) 해지 가능

다. 보상비 / 혜택

- 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 단, 연차 이내차(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 지급

2) **교통비 지급(귀향여비) :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소집부대까지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

* 지급기준 : 30km 이내 4,000원, 31km 이상 연료비 + 통행료

3) 혜택

- 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육군 Mili-Pass 및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
- 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
- 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 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
- 마) 1년 단위 훈련(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

3 유의사항

- 가. 지원서는 심의 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신원조사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다.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정부예산 및 부대운영에 따라 복무일수, 혜택 등 계획 변경 가능
- 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 승인 대상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
-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병대사령부(동원예비군과), 모집부대 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

4 문의

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나. 해군본부 동원과 : 042-553-3511

다. 해병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 031-8012-3391

라. 모집부대 연락처

구 분		문 의
해 군	1함대	033-539-4532
	인방사	032-451-4342
	5전단	055-549-5107
	3함대	061-263-5024
	2함대	031-685-4532
	항공사	054-290-6336
	진기사	055-549-4263
	8전단	055-549-6037 055-549-6290
해병대	교육훈련단	054-299-1642
	1사단	054-299-3181
	9여단	064-905-3453

【참고법령】

-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

-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5년 단기 상비에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직책

① 해 군 : 총 18명

구분	직위	병과/군사특기	계급	인원	
5전단(2)	LOTS전대 (전대본부, 1/2대대)	작전담당	함정(항해)	대위	2명
3함대(3)	여수기지대	경비반장	무장	중사	1명
	옥포기지대	경비반장	무장	중사	1명
	울산기지대	경비반장	무장	중사	1명
항공사(2)	전술항공통제대	항공교통 관제지원담당	항공관제	중사	2명
8전단(11)	예비전력관리전대	무장부사관	무장	하사	1명
		감판부사관	감판	중사	1명
		추기부사관	추기	중사	1명
				하사	1명
		전기부사관	전기	하사	1명
		보수부사관	보수	중사	1명
				하사	1명
		조타부사관	조타	하사	1명
사통부사관	사통	중사	1명		
		하사	2명		

② 해병대 : 총 22명

구분	직위	병과/군사특기	계급	인원	
교육훈련단 (2)	1704대대	정보과장	보병	대위	1명
1사단 (6)	163/165대대	작전과장	보병	소령	2명
		정보과장	보병	중위	2명
	161/166대대	군수과장	보병	대위	2명
9여단 (14)	91/92/93대대	정보과장	보병	대위	3명
		중대장	보병	대위	5명
		행정관	보병	상사	4명
	포병대대	정찰측지장교	포병	대위	1명
		포술부사관	포병	중사	1명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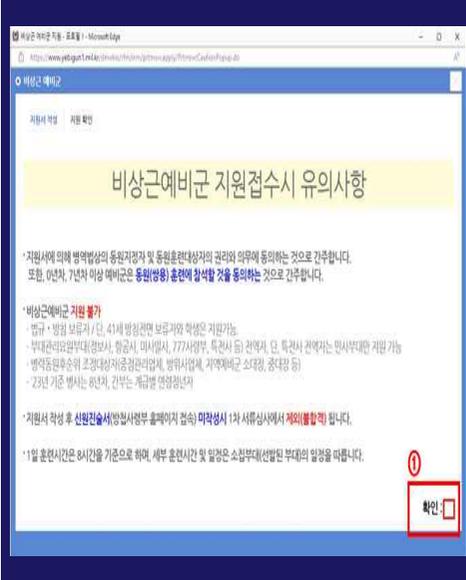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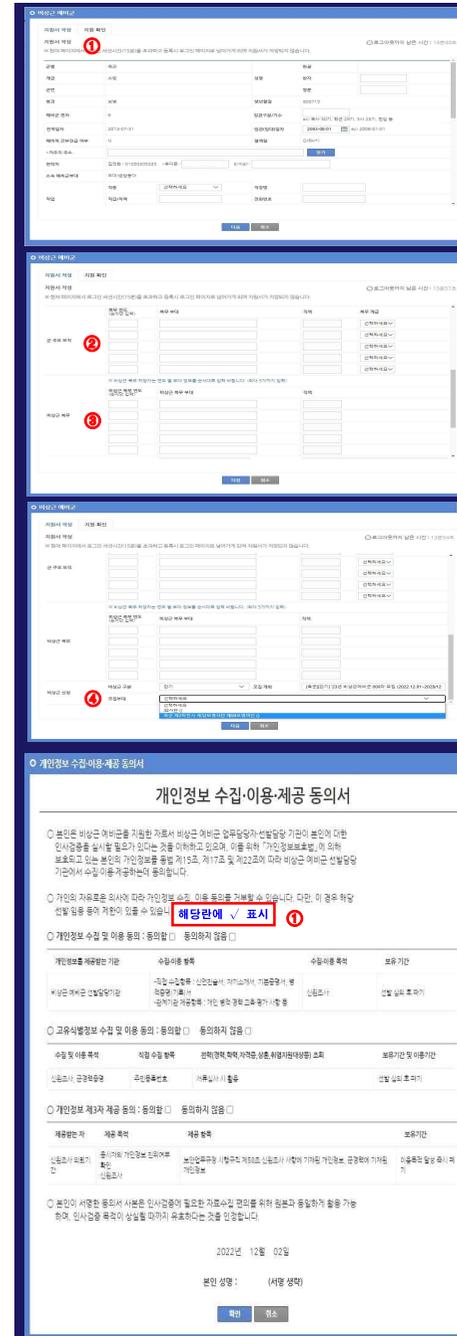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
 - ① 로그인 : 간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②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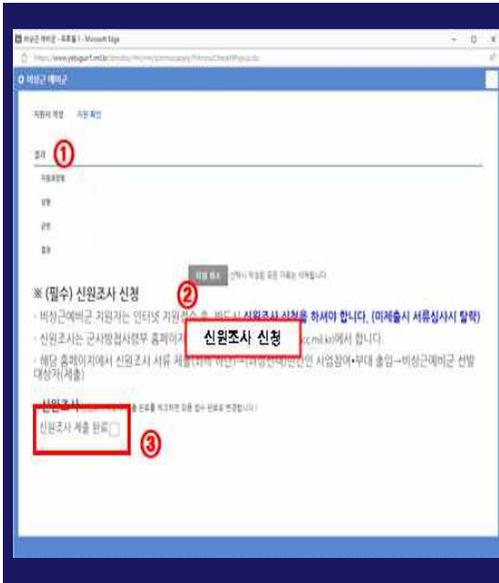
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
 - 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
✓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3. 지원서 작성
 - ① 개인 신상 작성
 - *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
 - ② 군 주요 보직
 - * 본인의 군 경력 입력
(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육군
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
 - ③ 상비예비군 복무
 - *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
및 부대 입력
 - ④ 상비예비군 신청
 - *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
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
*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
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
미션발될 수 있음.

※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
 - *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



5. 지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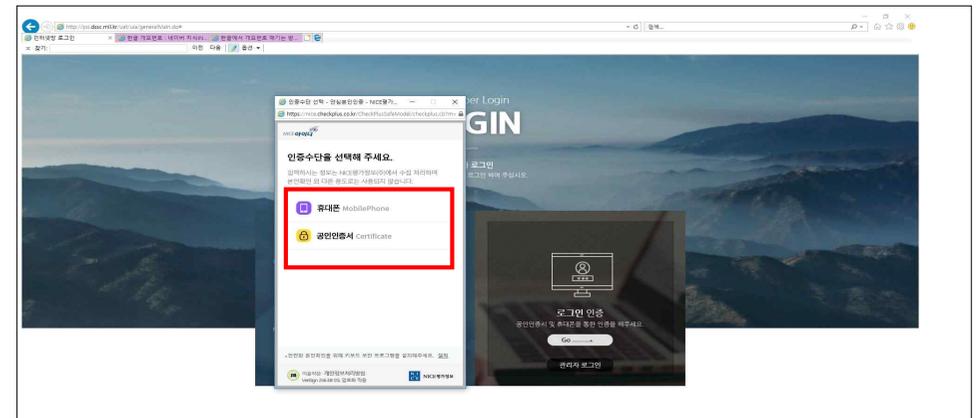
- 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 확인 ⇨ 접수 대기
- 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
 - *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 신원조사가 꼭 필요.
- 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서류제출 완료 ✓ 표시 ⇨ 접수 완료

신원조사 서류제출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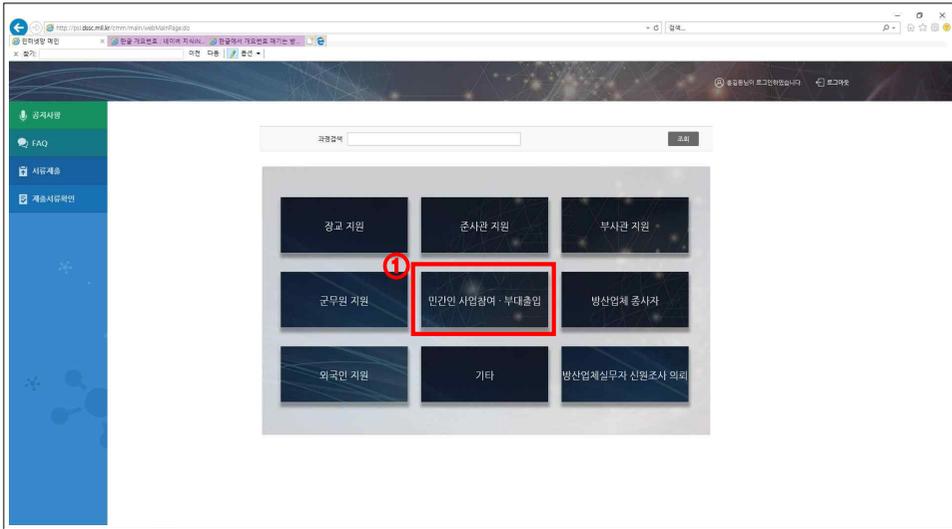


- 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내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 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

과정선택



① “민간인 사업참여 · 부대출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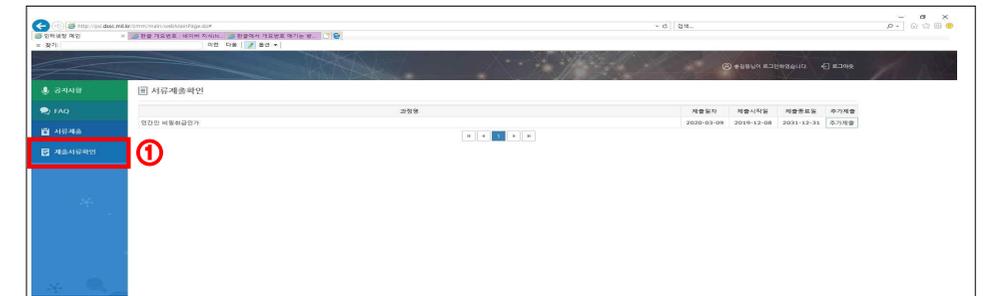
과정명	제출시작일	제출종료일	제출
정보통신 기반체계 유지·보수 업체 직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① 1차 및 재채용인(외국인 포함) 계약재조사	2022-12-06	2099-12-31	제출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2023-02-27	2099-12-31	제출
보안시스템 연구개발자, 정보통신체계 유지·보수 업체 직원, 부대출입, 비밀공사 참여 등으로 신원조사 후 3년 경과자	2022-12-06	2099-12-31	제출
비밀취급인가	2022-12-06	2099-12-31	제출
부대 고종 직원 및 영내 복지시설 상주 근무자 중 군사보호(통제·제한)구역 출입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군사보안시설 1개월 이상 출입 민간인	2022-12-06	2099-12-31	제출
비밀공사 참여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보안시스템 연구개발 및 취급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DMZ 출입인원	2022-12-06	2099-12-31	제출

①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

서류제출

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② 제출

서류제출 확인



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
→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